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98
----------	------

2017년 2월 2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2월 3일, 남재경 의원
- 나. 회부일자 : 2017년 2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27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7년 2월 22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남재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가 2015년 2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 이전에는 점용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유사 시설인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였으나, 2015년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점용대상에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가 별도로 분류되어 「도로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 본 조례 개정 전 지중정착장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점용료 인상으로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시민이 점용허가 받은 경우 최초 허가사항과 변경이 없을 경우 최초허가 때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예외규정 신설이 필요함.
- 또한 도시공원 조례에 명시된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점용료 산정 기준이 삭제된 「도로법 시행령」 [별표 4]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나. 주요골자

- 법 시행령 개정 전(2015. 2. 1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점용허가 사례는 최초허가 시점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 한다’ 는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점용료 산정기준인 ‘도로법 시행령 [별표 4] 준용’을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준용’으로 개정(안 별표 3)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기 타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가. 개요

- 공원을 점용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동법 제24조와 제38조의 기준에 의해 공원을 점용 할 수 있음.
-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이 명시되어 있으며, 점용료 부과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에서 정하고 있음.
-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점용시설로 추가된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점용료 부과 기준 시점을 명시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법령과 조례의 개정 연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는 점용허가 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2015년 2월 10일 법률 개정안을 통해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와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¹⁾가 점용허가 시설로 추가되었음.
- 이에 따라 조례에서도 점용료 부과 기준이 필요하여, 제264회 임시회를 통해 2016년 1월 7일 조례를 개정하였음.
- 동 조례에 제시된 점용료 부과 근거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를 준용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도록 명시하여 타 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2) 지중정착장치 점용료 부과 현황

- 공원 점용허가 중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설치 사례 조사 결과, 5개 공원에서 도로 및 건축물 공사를 위해 지중정착장치 설치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점용기간동안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고, 공사 완료 후 철거하도록 허가된 사례가 있었음.
- 단기간에 공사가 완료되고 점용이 종료되는 경우는 점용료 부과 방식 변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 그러나 2005년 종로구 인왕산 인근에 아파트 건설을 위해 점용허가를 받아 지중정착장치를 설치한 사례는, 최초 허가 시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가 명시되지 않아 유사시설물인 ‘수도관 설치 기준’에 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며, 현재까지 3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하고 있음.

1) 어스앵커(Earth anchor): 흙 속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PC강선을 매입하여 모르타르로 굳혀서 인발 저항을 크게 한 것으로 흙 막기의 토압지지 등에 사용하는 지반정착공법임.

- 연장계약을 위해서는 변경된 조례로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하며, 점용료 산정 방식 변경으로 점용료가 급증하게 되었음.

표.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설치를 위한 공원 점용 허가 사례

공원 관리청	공원명	점용기간	점용자	점용료 (천원)	점용료 산정기준	비고
중로구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05.3.28.~16.1 2.31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9,600	조례 개정전 시행: 도시공원조례 별표 3(수도관)	
	인왕산 어린이공원	05.3.28.~16.1 2.31				
중랑구	용마 도시자연공원	15.4.1~ 15.10.31.	학교법인 세방학원	2,250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공사완료 후 제거
구로구	천왕 근린공원	16.11.4~17.1 0.24.	SH공사	면제	-	공사완료 후 제거
강남구	개포 근린공원	16.3.21~ 17.3.19	삼성물산	2,186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공사완료 후 제거
	개포 근린공원	16.11.15~17. 3.14	현대건설	13,237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공사완료 후 제거
강동구	동명 근린공원	16.11.14~17.1 2.31	현대건설	14,751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공사완료 후 제거
동부	보라매 근린공원	16.12.19~21. 6.30	남서울 사업단	면제	-	공사완료 후 제거

3) 점용료 부과율의 변화

- 2016년 조례 개정 이전에는 지중정착장치가 점용허가 대상에 없어 ‘수도관,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점용료는 점용면적을 기준으로하고 점용요율(재산가의 10/1,000)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그러나 「도로법 시행령」의 경우는 점용거리와 지중정착장치의 m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고 있어 점용료 산정 방식이 상이하였음.
- 따라서 2005년 점용허가 받은 아파트의 경우, 2016년 동 조례 개정으로 점용허가 대상에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가 신설되고, 점용료 부과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최초 협의시 보다 약 300% 이상의 점용료 인상이 발생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점용료 : 9,635,990원 [점용료 = 점용면적×공시지가×법정요율(10/1,000)×점용기간(1년)] ● 변경 점용료 : 33,521,400원 [점용료 = 점용길이×점용료(1,800원/m)×점용기간(1년)]

4) 점용료 부과 문제점

- 점용료 부과 당시에는 점용료 산정 기준이 면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면적에 대한 자료만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는 점용길이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지중정착장치는 땅 속에 매립된 상태로 점용의 길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임.
-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69조3항에는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점용료는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 바, 동일 법령에 의한 점용료는 급등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는 이러한 기준이 반영되지 않아 점용료가 급등하게 됨.
-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해 급증한 점용료는 점용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며, 산정 근거 변경으로 최초 설치시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어스앵커 점용허가는 최초 허가시점의 점용료 산정 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점용료 부과시 단서 조항을 명시하여 점용료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한 혼선 억제와, 급등한 점용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함.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5) 기타사항 변경

- 현재 조례상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4]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어 점용료 산정기준이 [별표3]으로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에서도 「도로법 시행령」 [별표4]를 [별표3]으로 개정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17조 관련)

점 용 대 상		단위기준	점 용 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		연액	해당재산가액의 10/1,000
변전소, 공동구,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노외주차장,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및 철도		”	해당재산가액의 20/1,000
전주, 지상에 설치하는 도로, 교량		”	해당재산가액의 25/1,000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이와 유사한 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100/1,0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 준용 ※ 법 시행령 개정 전(2015.2.10.) 어스앵커 점용허가 사례는 최초 허가시점의 점용료 산정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태양에너지 설비	태양광설비	”	에너지조례 제25조 관련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준용
	기타		해당재산가액의 10/1,0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3] 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17조 관련)			[별표 3] 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17조 관련)		
점 용 대 상	단위기준	점 용 료	점 용 대 상	단위기준	점 용 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	연액	해당재산가액의 10/1,000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	연액	해당재산가액의 10/1,000
변전소, 공동구,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노외주차장,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및 철도	"	해당재산가액의 20/1,000	변전소, 공동구,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노외주차장,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및 철도	"	해당재산가액의 20/1,000
전주, 지상에 설치하는 도로, 교량	"	해당재산가액의 25/1,000	전주, 지상에 설치하는 도로, 교량	"	해당재산가액의 25/1,000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이와 유사한 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100/1,000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이와 유사한 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100/1,0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4] 준용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 준용 ※ 법 시행령 개정 전 (2015.2.10.) 어스앵커 점용허가 사례는 최초 허가 시점의 점용료 산정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태양에너지 설비	태양광설비	에너지조례 제25조 관련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준용		"	에너지조례 제25조 관련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준용
	기타	해당재산가액의 10/1,000		"	해당재산가액의 10/1,000
			태양에너지 설비	태양광설비	에너지조례 제25조 관련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준용
			기타	기타	해당재산가액의 10/1,000